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61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정진욱·김동아·양부남

박지원 • 박홍배 • 오세희

이개호 • 조인철 • 허성무

이언주 · 안도걸 · 이강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원 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고 그 처분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13년 직수입자간 제3자 처분의 허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급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으로 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제3자 처분의 절차·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난 '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시도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2항).

법률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 중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처분절차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 3.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생 략)	등의 처분 제한) ① (현행과 같
	<u></u> 이 교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	②
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	
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u>경우</u>	<u>경우</u>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
으로 정한다.	여야 하고, 구체적인 처분절차
	<u>등에</u>
<u><신 설></u>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u><신 설></u>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u><신 설></u>	3.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의 교환
<u><신 설></u>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u>교환</u>
<u><신 설></u>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